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22호

「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8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##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정이유

-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다.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라. 추진 사업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  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 - 전화: 033-640-4118
  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#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이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자”란 시에 주소를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3. “소상공인”이란 시에 주소를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 등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(이하 “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- ② 중소기업협동조합,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의

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고,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·단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**제4조(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)**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·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**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
2.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
3.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
4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
5.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
6.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

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,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표창)**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
1.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
2.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「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